

##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jcho@kwdimail.re.kr

###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을 제정·공포하고 그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타난 사회적기업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502개(2010.12기준)이며, 서울지역의 인증기업은 114개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발전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력개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2009)
-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2007) 등

고 있다. 이 수치는 2010년 1월 287개에 비해 1.7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실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증조건을 갖는다. 여러 인증조건 중 하나로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인증신청일 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거나 전망하고 있는 주요 여성 비영리기관 및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포함한 인증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조선주 외,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자립을 지향한다. 단기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으로 육성하여 지속적 일자리 창출하는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이 상존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3년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 지속 확대하여 2009년에는 165,661백만원을 투입하여 17,735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주요 참여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고려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논의하고,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sup>1)</sup>되어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활성화, 윤리적 시장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10).

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참여단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포함)된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지부와 사업단 포함)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종전에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단체로 이미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NGO단독형, 공익형 사업 참여 단체도 기업,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다<sup>2)</sup>. 상기사업의 대상사업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보육, 예술, 관광,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가사지원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가사, 간병, 단순 인력지원 등 파견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신청을 배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여성친화적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 정의와 필요성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의 특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수혜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 및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 주 노동력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돌봄 서비스 부문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적기업화하는 것을 말한다(김영옥·조선주 외, 2007).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어 여성이 다수 참여해온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여성친화적 사업적기업이라고 정의하며, 이 중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여성친화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을 논제로 삼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첫째, 사회적 기업의 60% 이상이 여성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김영옥, 2007; 이성은, 2009) 사회적기업의 여성들을 위한 노동 시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여성친화성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주 노동력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부문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적기업화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옥·조선주 외, 2007)<sup>3)</sup>. 두 번째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배려심이 강점으로 작용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3)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은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노동 혹은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가족 내 여성의 사적영역의 노동으로 취급되던 부분을 사회적인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여성의 노동 가치를 재평가 받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현재 이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들이 100% 여성이므로 이 일자리들은 여성의 욕구에 민감하여야 한다. 여성의 욕구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여성적 이해에 충실해야한다.

4) 여성들이 창업하거나 대표로 있는 기업은 주로 고용창출형, 간병 및 보육지원형, 교육형, 문화예술관광형, 보건 및 환경지원형 등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유진, 2011).

### III. 서울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여성의 경제 활동

#### 1. 인증사회적기업 분석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건으로는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등이다. 한편 ①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한 보호된 시장 제공 ② 경영 및 컨설팅, 시설비, 재정 지원 ③ 연계기업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2010년 12월 기준으로 인증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502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용노동부). 이 중 235개 기업이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46.8%)에 편중 분포를 보였으며, 경상 21.7%, 전라 13.1%, 충청 1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지역별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지역	기업수(개)	비율(%)
서울	114	22.7
경기인천	121	24.1
강원	31	6.2
충청	50	10.0
경상	109	21.7
전라	66	13.1
제주	11	2.2
합계	502	100.0

자료: <http://www.socialenterprise.go.kr>(2010.12.기준)에서 연구자가 재구성함.

서울의 사회적기업은 113개<sup>5)</sup>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고용노동부가 구분한 업종유형에 따라 분석해보면, 교육(39개, 34.5%), 기타(32개, 28.3%), 문화예술(16개, 14.2%)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국 인증기업의 업종별 분포가 기타 28.7%, 환경 18.5%, 간병·가사지원이 15.7%를 차지한 것(조선주, 2008)과 비교해보면, 그 분포의 현황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

<표 2> 서울지역 업종별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지역	기업수(개)	비율(%)
간병,가사	11	9.7
교육	39	34.5
기타	32	28.3
문화,예술	16	14.2
보건	1	0.9
보육	1	0.9
사회복지	7	6.2
산림보전	1	0.9
환경	5	4.4
총합계	113	100.0

자료: <http://www.socialenterprise.go.kr>(2010.12.기준)에서 연구자가 재구성함.

상기 교육분야의 구체적인 사회적기업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은데, 주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정규강사로 채용하여 놀이 및 문화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여 패턴은 결혼시점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어 30대 후반에 다시 재진입하는 M자형 모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30-35세 구간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과거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오은진, 2010).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문제는 저학력 여성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오히려 청년시기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반면 고학력 여성들은

5) <http://www.socialenterprise.go.kr>(2010/12기준)의 전체통계자료에는 114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리스트는 113개만 얻을 수 있었으므로 113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30대 초반에 이탈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L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여성취업자의 학력별 변화추이에 따르면, 고학력 여성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학력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7년을 기점으로 대졸여성 취업자 수가 고졸 취업자 수를 넘어서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조연숙, 2010). 이러한 서울시의 교육분야 사회적기업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로 보여진다.

〈표 3〉 서울지역 교육분야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 (주)착한여행	· 놀이교육연구소 놀이나무사업단
· 사회복지법인자선단관악시니어클...	· (주)아시아트레져네트웍
· (사)서울오케스트라	· (주)두비컴뮤니케이션
·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서...	· 한국YMCA전국연맹 카페티모...
·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세하앤...	· 시민영상문화기구 영상미디어센...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	·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진...
· (주)효성로하스	· (주)연우와함께
· 사회복지법인 성요한복지회 그...	· 사회복지법인 나누리인쇄사업소
· (주)유유자적살롱	· (사)한국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
· (사)여성자원금고 행복을파는...	· (주)영화제작소 눈
· 웹와치주식회사	· (주)이야기꾼의 책공연
· 문화로놀이짱	· (주)좋은세상베이커리
· 사단법인사람과마을 성미산마을...	·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 ...
· 서울프린지네트웍	· (주)에듀머니
· (사)막달레나공동체 동고리사...	· (사)청소년교육전략21
· 한국청소년재단 사업단 I P...	· 오가니제이션 요리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 (주)미디어교육연구소
·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도서...	· (주)우리가만드는미래
·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 문화예술NGO 예술과시민사회	-

## 2. 예비사회적기업 분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와 취업취약계층 상존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으로 육성하여 지속적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원인원은 사업별로 5명 ~ 10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역량과 사업모델이 우수할 경우 심사시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고,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 판로 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립구조가 명확한 경우에 가능하다.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은 1년, 모델발굴형은 6개월을 지원하는데, 참여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자체, 기업과의 연계 등 지원하며,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 연구비 등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제시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는 총 99건으로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9개 성공기업 중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62.9%)에 편중 분포를 보였으며, 경상 17.2%, 전라 14.1%, 충청 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성공사례 현황

지역	기업수(개)	비율(%)
서울	42	42.4
경기인천	20	20.5
충청	5	5.1
경상	17	17.2
전라	14	14.1
제주	1	1.0
합계	99	100

자료: <http://www.socialenterprise.go.kr>(2010.12.기준)에서 연구자가 재구성함.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문화(27개, 27.3%), 지역(24개, 24.2%)교육(17개, 17.2%), 녹색(17개, 17.2%)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우선선정 사업기준인 환경, 문화 등 미래성장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지역연계형 기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업종별 예비사회적기업 성공사례 현황

업종	기업수(개)	비율(%)
교육	17	17.2
기타	3	3.03
녹색	17	17.2
돌봄	4	4.04
문화	27	27.3
제조	7	7.07
지역	24	24.2
총합계	99	100

자료: <http://www.socialenterprise.go.kr>(2010.12.기준)에서 연구자가 재구성함.

서울의 예비사회적기업은 42개로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업종별 특징은 상기 전체의 업종별 예비사회적기업 성공사례 현황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문화(14개, 33.3%), 교육(10개, 23.8%), 지역(7개, 16.7%)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6〉 서울지역 업종별 예비사회적기업 성공사례 현황

업종	기업수(개)	비율(%)
교 육	10	23.8
기 타	3	7.14
녹 색	5	11.9
돌 봄	1	2.38
문 화	14	33.3
제 조	2	4.76
지 역	7	16.7
총 합 계	42	100

자료: <http://www.socialenterprise.go.kr>(2010.12.기준)에서 연구자가 재구성함.

#### IV. 예비사회적기업, 진정한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상기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과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주요 참여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고려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많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진정한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1.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보육·양성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활성화, 윤리적 시장확산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표방하는 사회적 목적은 사회서비스제공형에 비해 일자리 제공

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자활 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같이 고용창출 정책으로 제도적으로 육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으로 구분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실례로 문화 및 교육분야의 사회적기업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정규강사로 채용하여 놀이 및 문화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 또한 문화 및 교육분야 사회서비스의 수혜자 측면에서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문화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며, 수요자의 측면에서 문화 및 문화, 역사 교육 등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서민층이나 중산층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삶의 질 향상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일자리 제공의 사회적목적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보육·양성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2. 적극적인 재정지원책 및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지원확대

정부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기업연계형 및 지역연계형은 1년, 모델발굴형은 6개월 의 참여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액(8.5%) 등을 고려하여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32천원 지원하고, 단시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자체, 기업과의 연계 등 지원하고,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 연구비 등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경우 기업연계형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지역연계형이나 모델발굴형은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지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

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과 같은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윤 추

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재원 지원책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적절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정시점까지는 민간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창업자금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출요건완화 및 보증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이 대부분인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초기에 일정정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더라도 참여자 인건비지원,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의 재정지원 혜택이 있지만 인건비의 경우 인증기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에도 퇴직금 및 기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지원하는 것 외에도 휴면금융이나 복권기금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장정순, 2007; 김영옥, 2007)

### 3.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해답 얻기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시행해오던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는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에 사회적목적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나 사회서비스 확충사업의 대부분이 지나치게 정부중심의 단기, 임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양용희, 2009).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등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지역자원, 지역 네트워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된 인프라가 기반을 이루는 곳으로 고용 창출과 유지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사회적 욕구의 발현공간이기도 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인구통

계학적 요인 및 경제적 상태에 따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과도 핵심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주체가 되는 비영리조직의 참여확대가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주체가 되는 비영리조직들이 스스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민간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의 규모가 크고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전통적 비영리조직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4. 업종 특성화를 통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활성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종을 특성화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종 네트워크의 형성 및 활성화,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 및 활성화, 전문가 지원네트워크 형성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위한 다양한 업종 개발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컨설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육 및 문화분야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비율이 높으며, 고학력 여성들이 많다. 또한 지속가능한 여성친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운영 주체인 양질의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여성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성 인력개발기관들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 중복성에 대한 조정의 주체가 되어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 전문화, 세분화,

다양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업종의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취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리모델링을 통해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고정화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사회적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할 때 요구되는 재무, 회계, 인재관리 등과 같은 실질적인 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하여 지원하는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모체로써 성장 가능하며, 서울시의 지역수요를 담아내어 지역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SDI**

**참고문헌**

- 김영옥 외(2007), 「여성 친화적 사회적기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양용희(2009),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전망」, 사회적기업연구포럼
- 오은진(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향후과제」, 서울경제
- 장원봉(2007),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 조선주 외(2008), 「여성 친화적 사회적 기업 발전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 조연숙(2010),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취업의 발전방안」, 서울경제
- 한유진(2011), 「국내여성사회적기업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경기웹진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go.kr>